## 한국교육방송공사법



[시행 2025. 9. 9.] [법률 제21047호, 2025. 9. 9., 일부개정]

방송통신위원회 (방송정책기획과) 02-2110-1415

제1장 총칙 <개정 2015. 1. 20.>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제2조(법인격) 한국교육방송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제3조(주된 사무소)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제4조(자본금)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.

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**제5조(정관의 기재사항)**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2.>
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4.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- 5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6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- 7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8. 사채발행(社債發行) 및 차입에 관한 사항
- 9.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10. 공고의 방법
- 11.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
- 1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(이하 "방송통신위원회"라 한다)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10.>
-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.<신설 2019. 12. 10.>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제6조(등기)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6조의2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[본조신설 2015. 1. 20.]

**제7조(업무)**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0. 12. 8.>

- 1.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
- 2.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
- 3.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
- 4. 방송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- 4의2.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- 5.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
- 6.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
- 7.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 연구
- 8. 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**제8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**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제2장 기관 <개정 2015. 1. 20.>

제9조(임원)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,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.

- ②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. <개정 2025. 9. 9.>
- ③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.<개정 2025. 9. 9.>
-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,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5. 9. 9.>

[전문개정 2015, 1, 20.]

**제10조(임원의 임기)** ① 사장·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9. 9.>

- ②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,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③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- 1.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
- 2. 「정당법」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3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4. 「공직선거법」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5. 「공직선거법」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, 통신, 법률,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6.「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-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임원의 직무)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,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,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-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감사(監事)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(監査)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- 제13조(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  -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5. 9. 9.>
  - ③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,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.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,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.<개정 2025. 9. 9.>
  -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이 경우 정수(整數)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,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,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.

각 교섭단체별 = 5 × 해당 교섭단체 + 각 교섭단체 추천인 수 = 5 × 의석수 \* 의석수의 합계

- 2. 공사의 시청자위원회(「방송법」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를 말한다)가 추천하는 사람 2명
- 3.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
- 4. 활동기간, 주요 활동내역,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
- 5. 활동기간, 주요 활동내역,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
- 6.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
- 7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,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,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「방송법」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.<신설 2025. 9. 9.>
- 1.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
- 2.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
- 3. 추천 이유
-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개정 2025. 9. 9.>
- ⑥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25. 9. 9.>
- ⑦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 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25. 9. 9.>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.<신설 2025. 9. 9.>
- ⑨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<신설 2025. 9. 9.>
- ⑩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개정 2025. 9. 9.>
- ①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25. 9. 9.>
- 1.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
- 2. 공개하면 개인 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감사・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②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.<개정 2025. 9. 9.>

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 <개정 2025. 9. 9.>

- 1. 공사가 수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
- 2. 예산·자금계획 및 운용계획
- 3.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(移越)
- 4. 결산
- 5.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
- 5의2. 제9조에 따른 사장·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
- 5의3.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
- 6.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
- 7.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8.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과 그 상환계획
- 9. 손익금의 처리
- 10. 정관의 변경
- 11.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
- 12.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(監事)에게 공사의 감사(監査)를 요청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- **제14조의2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치 등)**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(이하 "사장후 보국민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·연령별·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「공직선거법」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.
  -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  -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한다.
  -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, 면접,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  -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5. 9. 9.]

- 제15조(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) ①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이사는 본인 또는 「민법」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.
  -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  - ③ 공사의 이사·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**제16조(대리인의 선임)**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제17조(직원의 임면)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(任免)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제3장 회계 <개정 2015. 1. 20.>

- 제18조(회계처리)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-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「정부기업예산법」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- 제18조의2(이사 · 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  - 1. 이사 임원의 보수, 각종 수당 내역
  - 2. 이사 · 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
 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1. 10. 19.]

- 제19조(재원)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충당한다.
  - 1.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(出捐額)
  - 2. 「방송법」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
  - 3. 국가 ·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
  - 4.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・수수료 및 수익금
  - 5. 그 밖의 수입금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- 제20조(예산의 편성) ①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 · 의결로 확정한다. 예산이 확정된 후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5. 12. 1.>
  - ②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(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 2개월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운영 계획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 12. 1.>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**제21조(준예산)** ①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준예산(準豫算)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**제22조(운영계획의 수립)** 사장은 제20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2. 1.]

- 제23조(결산서의 제출) ① 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- 1.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
  - 2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
  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(이하 이 조에서 "결산서등"이라 한다)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2. 21.>
  -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야 한다.<개정 2018. 2. 21.>
  -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2. 21.>
  -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,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제24조(보조금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(社債)를 인수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제25조(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)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- 제26조(감사)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.
  - ② 내부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  -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「감사원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제4장 벌칙 <신설 2015. 1. 20.>

제27조(벌칙)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8. 2. 21.>

[본조신설 2015. 1. 20.]

**제28조(과태료)** 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법제처 4가법령정보센터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. [본조신설 2015. 1. 20.]

부칙 <제21047호,2025. 9. 9.>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공사의 이사 및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사의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공사의 이사와 사장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3조(시청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는 제1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로 본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